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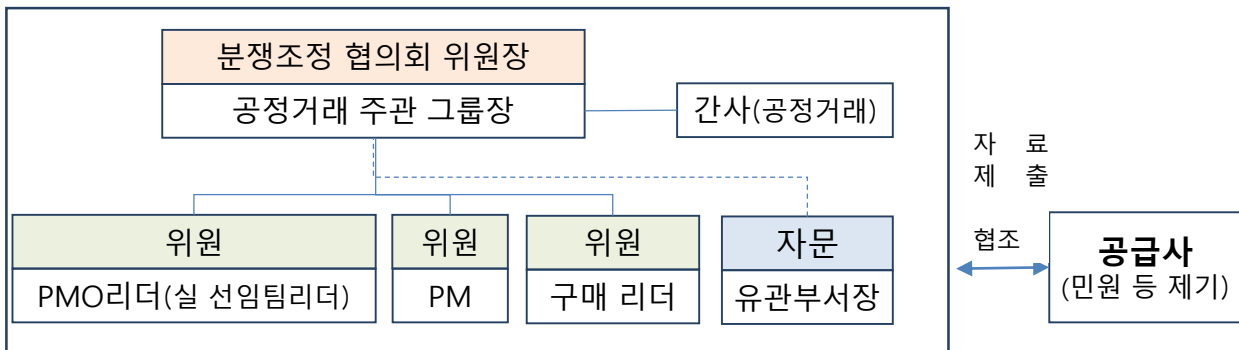
○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도의 도입과 운영

▷ 제도의 취지:

공급사의 불편사항, 건의사항, 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을 상담 및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공급사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공정거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함

○ 분쟁조정협의회 제도의 운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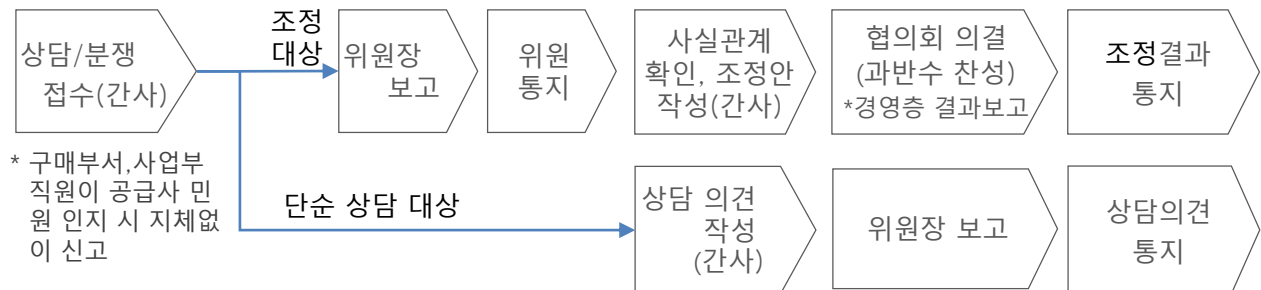
▷ 분쟁조정협의회 구성: 위원장(CP주관부서의 그룹장: 現 사업관리그룹장), 위원, 자문, 간사



▷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:

- 회사(사업부)와 공급사간 거래상 분쟁 조정(사업부의 협의회 조정요청 사항 포함)
 - 공급사(재하도급사 포함), 사업부서의 불편사항, 개선의견, 불공정행위 관련 상담
- (※ 조정 대상 제외: 내부감사/포스코 감사로 민원 제기, 공정위 등 신고, 소송 제기된 건)

▷ 분쟁조정 절차:



▷ 분쟁조정협의회 상담 창구:

- 공급사: 전자구매시스템의 『소통의 방』, (fairtrade@poscodx.com) (☎031-723-4242)
- 사업부서 직원: 이메일, 유선, 방문 상담